

서울특별시 금천구 줍깅 활성화 조례안

[윤영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407
------	------

발의일자 : 2023. 9. 5.

발 의 자 : 윤영희 의원

찬 성 자 : 장규권, 이인식 의원

1. 제안이유

줍깅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과 구민의 건강한 생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줍깅 활동의 정의(안 제2조).
- 나. 줍깅활성화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다. 줍깅활성화 사업 추진내용(안 제5조).
- 라.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줍깅 주간 지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23. 9. 5. ~ 9.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줍깅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줍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증진과 주민참여형 환경운동의 실천기반 마련으로 환경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줍깅”이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2. “줍깅 주간”이란 환경 의식 고취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실천을 위한 줍깅 활성화 기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줍깅이 구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줍깅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줍깅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구민 참여 및 홍보 방안
3. 줍깅 활성화 및 지원 방안
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줍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줍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줍깅 활성화 행사
2. 줍깅 홍보 및 환경보호 및 개선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줍깅 도구 및 장비 지원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2. 줍깅 도구 등을 보관하는 자율청소함 등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줍깅 주간 및 행사) ① 구청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고 줍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둘째 주 토요일이 포함된 주를 줍깅 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줍깅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줍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 주민의 복지증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사. 자연보호활동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